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33751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합자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31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849,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0. 1.부터 2024. 9. 26.까지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채권자는 '원고'로, 채무자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현철

별지